

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공공청사)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05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에 공공청사(소방서)를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임.

2. 주요골자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- 군계획시설 결정 : 공공청사 신설(A = 9,271㎡)

3. 참고사항

□ 주민의견 청취(공람공고)

- 가. 공람기간 : 2010. 3. 31 ~ 2010. 4. 13(14일간)
- 나. 공람방법 : 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,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및 평창읍사무소 게시판게시
- 다. 공람장소 : 평창군청(건설방재과, 도시과), 평창읍사무소
- 라. 제출의견 : 없음

□ 관련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10. 1. 22 ~ 2010. 03. 30

나. 협의부서 : 9개 부서(환경과, 주민생활지원실, 문화체육과, 상하수도사업소, 농축산과, 관광경제과, 건설방재과, 도시과, 민원봉사과)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

다. 제출의견(모두 반영)

관계 법령	협의 부서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환경정책 기본법	환경과	• 동법 제25조의2[별표2] 규정에 의거 환경성 검토 대상임.	• 본 사업면적은 9,271㎡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1만㎡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임.	-
소음진동 규제법	환경과	•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. (공사 착공전 신고요망)	• 실시계획 인가·고시후 공사 착공전 사전신고를 실시하겠음.	반영
대기환경 보전법	환경과	• 공사시행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.(공사 착공전 신고요망)	• 실시계획 인가·고시후 공사 착공전 사전신고를 실시하겠음.	반영
폐기물 관리법	환경과	•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(임목 등)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,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착공일 까지 하여야 함.	• 본 사업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5톤이상을 배출할 경우,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착공전 사전신고를 실시하겠음.	반영
하수도법	환경과	•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. 단, 하수처리장 연결 시 제외됨.	• 본 사업대상지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아닌 2011년 준공 예정인 평창하수처리장과 연결하여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.	반영
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	환경과	•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동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.	• 본 사업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할 경우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도록 하겠음.	반영
지하수법	환경과	•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하여야 함.	• 본 사업의 용수공급은 평창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임	-

관계 법령	협의 부서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장사등에 관한법률	주민생활 지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정지내 분묘개장이 필요한 경우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연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, 무연분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개장허가를 득한후 처리하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사업대상지는 지목 분류상 전, 답, 구거로서 분묘와 해당 사항 없음 	-
문화재 보호법	문화 체육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5의2.가목의(3)의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계획 작성하여 승인요청할 계획이므로 승인결과를 이행한후 공사착공하겠음. 	반영
수도법	상하수도 사업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지역은 평창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용수공급계획은 본 계획(안)대로 추진하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토의견을 준수하겠음. 	반영
하수도법	상하수도 사업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내이며 건축물 신축시 배수설비 설치신고 대상임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시계획인가고시후 건축물 신축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실시하겠음. 	반영
농지법	농축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법 제2조 규정에서 정한 농지의 범위 전, 답, 과수원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협의권자인 강원도지사(농어업정책과)의 협의를 득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원도지사에게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신청시 강원도 농어업정책과에 협의를 득하겠음. 	반영
액화석유 가스안전 관리 및 사업법	관광 경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톤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 할 경우 동법 제6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톤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6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득하겠음. 	반영
자연재해 대책법	건설 방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제5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.(강원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(행정계획)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신청시 강원도와 협의하겠음. 	반영

관계 법령	협의 부서	검 토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도로법	건설 방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편입필지 중 후평리 734번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영월~방림 국도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와 일부 중복되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함. • 진출입로가 확장 예정인 국도와 연결되므로 공사 시기 및 방법을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후 도로의 연결허가 및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주국토청과 협의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의 연결 및 도로 점용허가를 공사착공전 득한후 시행하겠음. 	반영
농어촌 정비법	건설 방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유재산상 영구시설물축조가 불가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구거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 사업대상지내 779(구거)번지 편입면적 370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하겠으며, 대체시설용지(도수로)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하겠음. 	반영
경관법 및평창군 경관형성조례	도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시행전 건축물(외형디자인) 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전 경관협의를 먼저 받으시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시행전 건축물(외형디자인) 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전 경관협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음. 	반영
도시교통정비 촉진법	민원 봉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도31호선에서 리도202호선으로 진출입시 가감속차로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므로 적합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토의견을 준수하겠음. 	반영
주차장 법	민원 봉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시설면적 2,388(차고지 436.6㎡제외) 법정 기준대수 16대 → 계획 주차대수 75대로 적합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토의견을 준수하겠음. 	반영
-	원주지방국토관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월~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예정인 734번지 외4필지에 대한 평창소방서 신축부지로의 사용요청 협의에 대하여 귀 군 의견대로 협의하오니, 공사시기 및 배수관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 책임감리원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시기 및 배수관계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책임감리원과 협의하겠음. 	반영

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9,271	-	9,271	100.0	
자연녹지 지역	9,271	-	9,271	100.0	

2. 군계획시설(공공청사:소방서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가. 군계획시설(공공청사:소방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공 청사	소방서	평창읍 후평리 734	-	9,271	9,271	-	

나. 군계획시설(공공청사:소방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공공청사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평창소방서	◦신설(A=9,271㎡)	◦ 평창읍 후평리 일원에 공공청사(소방서)를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한 소방청사부지 신규계획

편 입 토 지 조 서

1. 토지조서 총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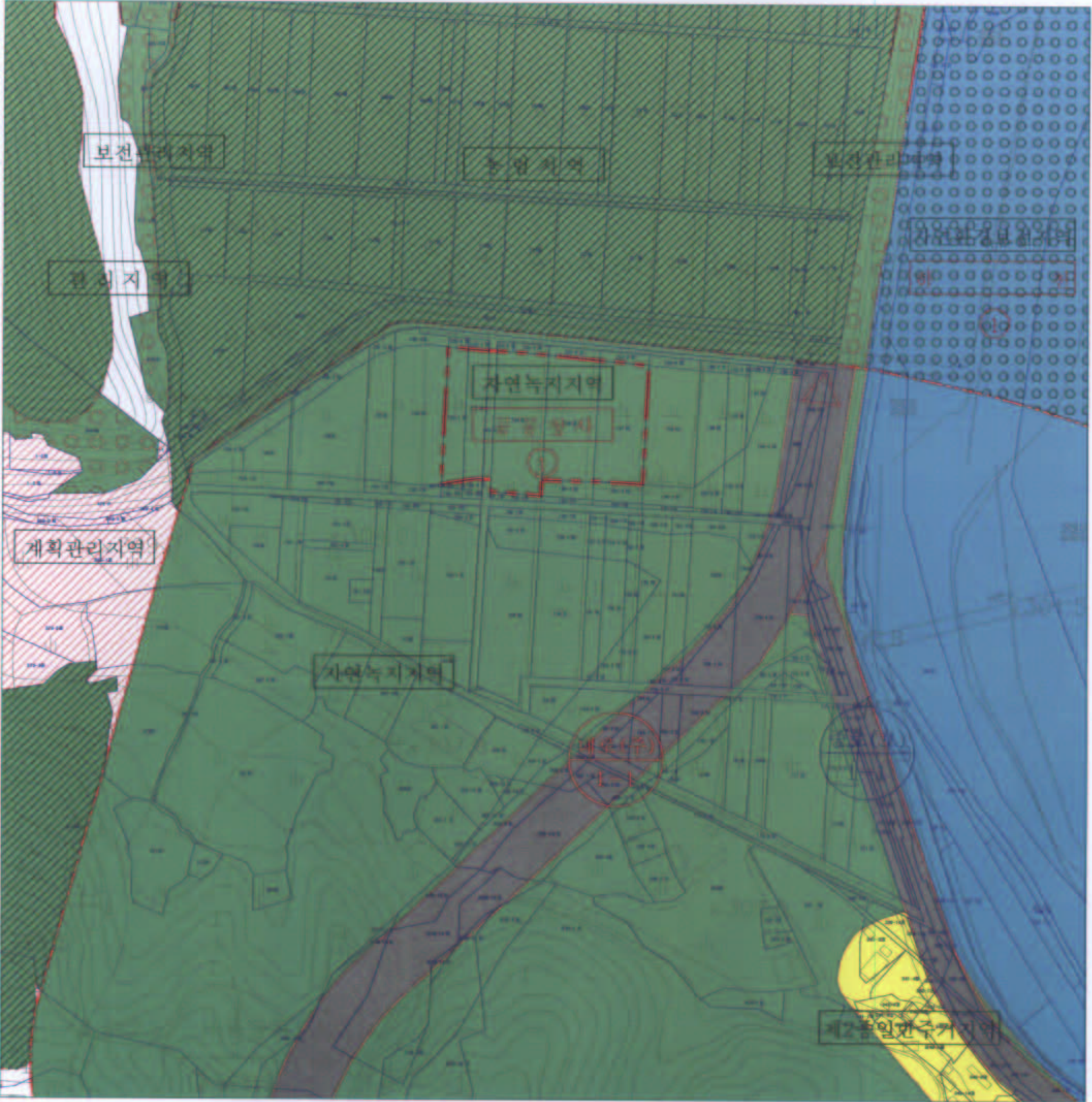
구 분	합 계		국유지		공유지		사유지		비고
	필지	면적(㎡)	필지	면적(㎡)	필지	면적(㎡)	필지	면적(㎡)	
합 계	6	9,271	1	370	5	8,901	-	-	
답	5	8,901	-	-	5	8,901	-	-	
구	1	370	1	370	-	-	-	-	

2. 토지조서

연 번	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주소	소유자	비고
합 계				11,352	9,271	-	-	
1	평창읍 후평리	733	답	930	930	-	평창군	
2	평창읍 후평리	733-1	답	999	999	-	평창군	
3	평창읍 후평리	734	답	2,608	2,608	-	평창군	
4	평창읍 후평리	736	답	2,248	2,248	-	평창군	
5	평창읍 후평리	737	답	2,116	2,116	-	평창군	
6	평창읍 후평리	779	구	2,451	370	-	국 (농림수산 식품부)	

관 련 도 면

1. 군관리계획 결정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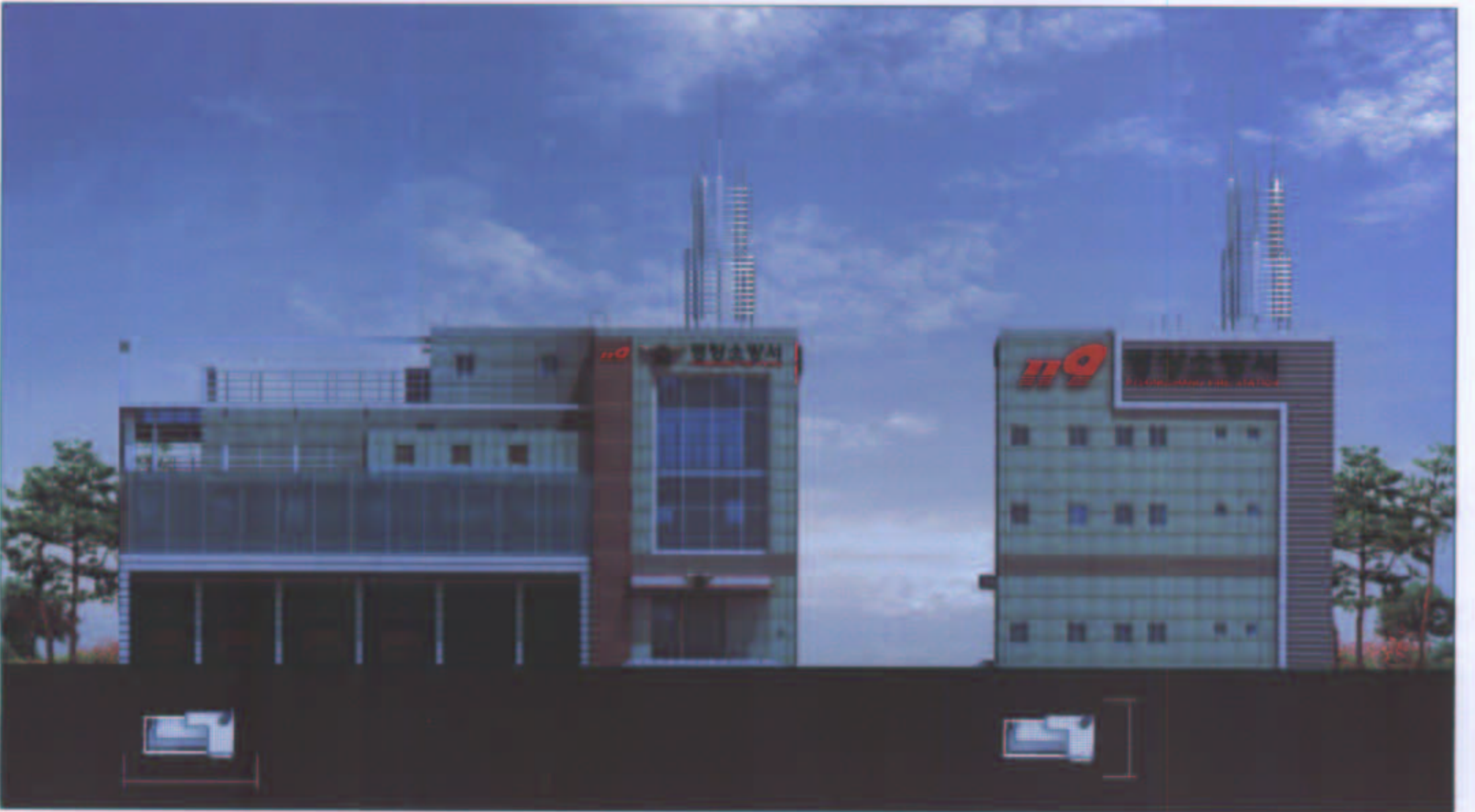
2. 주변현황도



3. 조성계획(안)도



4. 조감도

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국토해양부장관, 시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 - 마. 유통업무설비
 - 바. 학교중 대학
 - 사. 운동장
 - 아. 삭제 <2005.9.8>
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- 차. 화장장
 - 카. 공동묘지
 - 타. 납골시설
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